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2775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언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6,666,6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503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1. ‘B은 원고에게 256,640,741원 및 그 중 256,158,941원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전

- 1) B의 아버지 C이 2017. 7. 22.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및 B,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2) 피고와 B, E은 2018. 1. 29. 위 망인의 생전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단독 소유로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D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2018. 4. 10.경 각 2017.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8. 9. 21.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110,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다.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재산 상태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채무와 기업은행 등에 대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라. G은행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15. 12. 23. 3,400만 원을 대출해 준 후에 B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7910호), 2018.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G은행에게 45,697,870원 및 그 중 33,879,350원에 대한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G은행은 그 후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9275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50,584,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 16.자로 ‘피고는 G은행에게 2020. 2. 20.까지 3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급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G은행에게 2020. 3. 31. 17,000,000원, 2020. 4. 20. 17,680,000원 원 합계 34,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I가 2016. 12. 20. 현재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원리금 22,401,140원과 카드대출채권 원리금 15,176,178원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며 B에 대하여 위 각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534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I에게 37,577,318원 및 그중 19,872,325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I는 2019. 4. 3. B에 대한 위 판결 채권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19. 5. 3.경 B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H는 그 후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700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18,65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2. 8.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B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16,431,111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B에게 16,431,11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22. 11. 22.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원금으로 H에게 216,431,1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채권자인 G은행과 H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G은행의 소에 대하여는 2020. 4. 20.경에 이르러 B에게 34,680,000원을, H의 소에 대하여는 2022. 11. 22.에 이르러 B에게 16,431,111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가액의 회복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소송에서 피고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 중 피고가 G은행에게 지급한 34,680,000원, H에게 지급한 16,431,111원의 범위 내이고, 원고가 이 사건 2022.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과 관련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 당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중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회복이 이뤄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해당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은 없이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수익자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그 가액배상의 산정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주식회사 F에게 채권최고액 110,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을 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2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피고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2 지분에 대한 가액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하한가 상당액인 3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가액배상 산정시점이 상당히 차이 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한도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 이내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B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에서 피고가 G은행, H에게 가액 반환한 금액을 뺀 금액 26,666,666원[= 77,777,777원(= 35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 34,680,000원 - 16,431,111원]이라고 할 수 있다(원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를 37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금액 상당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위치와 종류, 갑 제5호증 기재된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된 부동산들도 역시 빌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이 주변 빌라들의 하한가를 넘어서서 상한가에 가까운 위 정도의 가격에까지 이를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제6번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6,6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별지1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30.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분의 28.50

2.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분의 27.49

3.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분의 27.49

4.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53.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분의 49.47

(이상 소유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년 4월 10일

접수 제71986호 갑구 순위번호 제2번

소유자

별지2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30.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분의 28.50

(이상 소유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년 4월 10일

접수 제71987호 갑구 순위번호 제2번

소유자

별지3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월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39.4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9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분의 36.55

(이상 소유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1.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년 4월 10일

접수 제71986호 갈구 순위번호 제2번

소유자

